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유한화학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Version history

버전 (Ver.)	승인일 (Approved date)	설명 (Version description)	Justification of Changes
1.0	승인 페이지 참조	제정	최초 제정

목차

1. 목적 (Purpose).....	4
2. 적용범위 (Scope).....	4
3. 용어와 정의 (Terminology and Definition)	5
4. 회사 개요 (Company Summary)	8
5. 유한화학이 준수하고 추구하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원칙	10
6. 유한화학이 추구하는 핵심적 사회적책임 주제 및 세부 지침	13
7. 보고서 발간(Report publication)	25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1. 목적 (Purpose)

- 1.1 유한화학의 핵심가치인 신의, 성실,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 유한화학 관련 주주,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1.2 경제적 가치 창출은 물론 환경·사회적책임을 다하여 글로벌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3 준법 준수가 유한화학의 기본 의무이고 사회적책임을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여 법 준수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1.4 이 지침을 통하여 유한화학이 사회적책임 분야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고, 사회적책임을 위한 여타의 협정문과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준수하고자 한다.
- 1.5 아울러, 본 지침은 지배구조, 인권, 윤리, 노동, 보건과 안전 및 환경,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영시스템에 대한 유한화학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적용범위 (Scope)

- 2.1 유한화학의 모든 제조소(안산 및 화성) 및 유한화학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유한화학 협력사인 공급사에게도 **공급(구매)관리 지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구매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2 유한화학의 준법 경영화와 더불어 정도경영을 위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구현을 목표로 작성되었으며, 유엔과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적용 범위 대상은 아래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2.2.1 조직 거버넌스
 - 2.2.2 인권, 노동(안전, 보건 포함)
 - 2.2.3 환경
 - 2.2.4 공정 운영
 - 2.2.5 소비자 이슈
 - 2.2.6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2.3 이 지침을 적용할 때 유한화학은 변화하는 국제행동규범과 일치하면서, 경제적 조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법적, 문화적, 정치적, 조직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2.4 사회적책임의 요소는 특정 시기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므로 변화될 수 있다. 유한화학은 사회의 관심이 변화함에 따라 유한화학에 대한 사회의 기대도 변화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3. 용어와 정의 (Terminology and Definition)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는 KS A ISO 26000:2010 에 따르며, 지속가능 경영 지침과 이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관련 법규 및 회사 내부 지침의 용어와 유사할 수 있다.

3.1 설명책임(Accountability)

조직의 집행기관, 법률 당국, 더 넓게는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과 활동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태

3.2 소비자(Consumer)

개인적 목적으로 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일반대중 개인

3.3 고객(Customer)

상업적, 개인적 또는 공적 목적으로 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직 또는 일반대중 개인

3.4 실사(Due diligence)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프로젝트 또는 조직 활동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체에 걸쳐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사전예방적인(proactive) 프로세스

3.5 피고용인(Employee)

국내법 또는 관행상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개인

3.6 환경(Environment)

공기, 물, 땅, 천연자원, 식물, 동물, 사람, 외부 공간 및 그 상호 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자연환경

3.7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

특정 상황의 맥락에서 옳거나 좋은 행동이라고 인정된 원칙에 부합하고 국제행동규범에 일치하는 행동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 3.8 양성평등(Gender equality)
남녀에 대한 공평한 대우
- 3.9 조직의 영향(Impact of an organization)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의 과거와 현재의 의사결정과 활동에서 기인한 사회, 경제 또는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
- 3.10 사회적책임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책임과 관련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명하게 기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 3.11 국제행동규범(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r)
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이나 보편적 혹은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부 간 협정에서 나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조직의 행동에 대한 기대
- 3.12 조직(Organization)
책임, 권한, 관계 및 식별 가능한 목표를 가진 단체(entity) 또는 사람과 시설 집단
- 3.13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
조직이 목표 추구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시스템
- 3.14 원칙(Principle)
의사결정 또는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
- 3.15 제품(Product)
조직이 판매를 위해 제시하거나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인 물품 또는 물질.
- 3.16 서비스(Service)
수요 또는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조직의 활동
- 3.17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과 관련된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한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자 간 또는 양자 간 협상, 협의 또는 단순 정보교환
- 3.18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으로서, 다음의 속성을 가진다.

- 3.18.1 사회의 보건 및 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
 - 3.18.2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한다.
 - 3.18.3 해당되는 법을 준수하며 국제행동규범을 지킨다.
 - 3.18.4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되며 조직의 관계 속에서 실행된다.
-
- 3.19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개인 또는 조직의 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의 정치적, 계약적, 경제적 또는 기타 관계의 범위/정도

 - 3.20 **이해관계자(Stakeholder)**
조직의 결정 또는 활동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집단

 - 3.21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조직의 결정을 위한 정보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직과 하나 이상의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 3.22 **공급사슬(Supply chain)**
조직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또는 당사자들

 - 3.23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 세대가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발전

 - 3.24 **투명성(Transparency)**
사회, 경제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활동에 대한 개방성과 이를 명확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고, 정직하며, 완전한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의지

 - 3.25 **가치사슬(Value chain)**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가치를 주고받는 모든 일련의 활동 또는 당사자들

 - 3.26 **취약집단(Vulnerable group)**
차별이나 불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보건 상황의 기초가 되고, 자신의 권리 실현이나 동등 기회를 누릴 수단 부족의 원인이 되는 특성을 하나 이상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단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3.27 근로자(Worker)

피고용인 혹은 자영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하는 사람

4. 회사 개요 (Company Summary)

4.1 일반사항 (General Information)

유한화학 (이하 유한)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에 위치한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이며, 구체적인 주소 및 정보는 아래와 같다.

	유한화학 (안산)	유한화학 (화성)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45 (우: 15619)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 8 길 162 (우: 18543)
GPS	37°18' 33.3"N, 126°44' 56.3"E	37°10' 06.0"N, 126°45' 42.4"E
FEI #	3004015296	3008853591
DUNS #	687831958	689517172
대표 수신인	-----	yuhanchemical@yuhanchem.co.kr
24 시간 연락처	-----	82-31-488-5800
팩스 번호	-----	82-31-319-0629
홈페이지 정보	-----	http://www.yuhanchem.co.kr

유한화학은, 교육 선각자이시며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 헌신적인 사회사업가로 추앙 받고 있는 참 경영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창업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회사이다. 1980 년에 설립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우수 원료의약품을 국내외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우량 제약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유한화학이 구축한 GMP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는 한국 MFDS, 미국 FDA, 유럽 EDQM, 일본 PMDA 등의 제약 선진국의 제조 기준에 모두 적합함을 인증 받아 글로벌 수준의 원료의약품 제조회사로 도약하였다.

유한화학은 고객의 가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의 IT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1 세기 기업경영의 요체인 지속가능 경영 체계의 일환으로 안전과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책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한화학은 유한의 정신인 “정직과 성실”을 구현하고자 매 순간 최선의 노력과 혁신을 추구하며,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 제약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4.2 기업 이념 (Corporate philosophy)

4.2.1 우수의약품 생산

- ① 우수한 원료의약품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고(故) 유일한 박사의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설립이념을 이어받아,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 나아가 인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 ② 성실한 납세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있어 가장 기본은 납세이며,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의 축적은 반드시 국가 발전에 바탕이 되는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환원해야 한다.”는 설립자의 철학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③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기업에서 얻어진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설립자의 신념을 실천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윤의 사회환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4.2.2 핵심 가치

① 정직과 성실(Progress & Integrity)



- a. 유한화학은 유한양행의 100% 투자로 이루어진 자회사이며 유한양행과 같이 핵심가치로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고 있다.
- b. 유한양행의 상징인 푸른 버드나무 위에 ‘Progress’, ‘Integrity’라는 두 단어가 새겨져 있는 신용표(信用標)에는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이 담겨 있다. 유한화학은 핵심가치인 Progress 와 Integrity 를 바탕으로 신의와 정직을 중시하고 정도경영, 투명경영을 앞장서 실천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매 순간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3 기타 회사 세부 이력 및 회사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나, 모회사인 유한양행의 기업 공시 정보 및 회사 내 관리 문서에 기재하여 공개한다.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5. 유한화학이 준수하고 추구하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원칙**5.1 일반사항 (General)**

- 5.1.1 본 지침은 ISO 26000 에서 제시하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유한화학의 지속가능 경영 지침과 방침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 경영 관련 주요 업무활동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정하여 실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 5.1.2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올바른거나 훌륭한 행동에 관한 수용된 원칙을 따르는,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또는 행동 규칙에 근거해서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5.1.3 국내 및 국제행동규범을 지키면서 경제 조건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법, 문화, 정치 및 조직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5.2 유한화학의 7 대 원칙 (7 principles of Yuhan Chemical Inc.)

- 5.2.1 유한화학내의 조직이 사회적책임에 접근하고 이를 실행할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 범위 내에서, 사회적책임에 대한 확정적인 원칙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한화학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7 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① 설명책임

원칙: 유한화학은 유한화학이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 a. 이 원칙에 따라 유한화학은 적절한 감시를 수용하고 이 감시에 대응할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 b. 설명책임에는 유한화학 조직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대해 경영진이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의무와, 유한화학이 법과 규정에 대해 법률 당국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 c. 유한화학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책임은 일반적으로 유한화학이 사회뿐만 아니라 유한화학의 결정과 활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답변하는 것도 의미하며, 이는 그 영향과 주변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 d. 설명책임은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을 개선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한다.
- e. 유한화학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책임을 지도록 노력한다.
- 사회, 환경 및 경제에 미친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영향, 특히 중대한 부정적 결과
 -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영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② 투명성

원칙: 유한화학은 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한화학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있어서 투명해야 한다.

- a. 유한화학은 사회 및 환경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고 발생 가능한 영향을 포함하여, 유한화학이 책임지는 정책, 의사결정 및 활동을 분명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도로 공개해야 한다.
- b. 이 정보는 유한화학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c. 이 정보는 유한화학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이해관계자 각각의 이해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사실적이어야 하며 분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d. 투명성 원칙 적용은 소유권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기밀 사항이거나 법률, 상거래, 보안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윤리적(도덕적 원리)행동

원칙: 유한화학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a. 유한화학의 행동은 정직성, 평등성 및 진정성(integrity)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 가치는 인간, 동물 및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미치는 유한화학의 활동과 의사결정의 영향을 다루겠다는 의지 표명을 의미한다.
- b. 유한화학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윤리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 유한화학의 핵심 가치 및 원칙을 명시한다.
 - 유한화학의 의사결정 및 다른 조직과의 상호작용에서 윤리적 행동의 촉진을 돕는 거버넌스 구조를 개발하고 이용한다.
 - 유한화학의 목적 및 활동에 적합하고 이 지침에서 기술한 원칙에 일치되는 윤리적 행동 표준을 채택하며 적용한다.
 - 유한화학의 윤리적 행동 표준 준수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 유한화학의 거버넌스 구조, 직원, 공급자, 계약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 특히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유한화학의 가치, 문화, 진정성, 전략 및 운영 그리고 유한화학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윤리적 행동 표준을 정의하고 의사 소통하도록 한다.
 - 유한화학 전체에 걸쳐 비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해 상충을 방지 또는 해결하도록 한다.
 - 윤리적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및 집행하기 위한 감독 체계와 통제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 보복의 두려움 없이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보고를 용이하게 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현지의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윤리적 행동과 상충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대응한다.

-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윤리적 행동 표준을 채택하고 적용한다.
- 동물의 생명 및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동물을 기르고 번식시키고 생산하고 수송하고 이용하기 위한 양질의 조건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복지를 존중한다.

④ 이해관계자 이해 존중

원칙: 유한화학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존중하고, 고려하며, 대응해야 한다.

- a. 유한화학의 목표는 유한화학의 소유자, 구성원, 고객 또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개인 또는 그룹도 조직이 고려해야 하는 권리, 클레임 또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집단적으로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도 있다.
- b. 유한화학은 **이해관계자를 정하고**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이해를 인식하고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해관계자가 표현한 관심사에 대응해야 한다. 필요시, 이해관계자가 유한화학에 참여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⑤ 법치 존중

원칙: 유한화학은 법치 존중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 a. 유한화학은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조직이 운영되는 모든 사법권 내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b. 유한화학의 관계 및 활동이 의도되고 해당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c. **모든 법적 의무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 d. **해당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⑥ 국제행동 규범 존중

원칙: 유한화학은 법치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행동규범을 존중한다.

- a. 법 또는 법의 시행이 적절한 환경적 혹은 사회적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한화학은 최소한 국제행동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b. 법 또는 법의 시행이 국제행동규범과 상충하는 국가에서, 유한화학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국제행동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c. 법 또는 법의 시행이 국제행동규범과 상충하고 이 국제행동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유한화학은 해당 사법권 내에서 유한화학은 관계 및 활동의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 d. 유한화학은 그러한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직 및 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있는 합법적인 기회와 정식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 e. 유한화학은 국제행동규범을 지키지 않는 다른 조직의 활동과 연루/공모(Complicity)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⑦ 인권 존중

원칙: 유한화학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중요성 및 보편성을 인식해야 한다.

- a. 유한화학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촉진해야 한다.
- b. 이러한 권리의 보편성, 즉 인권은 모든 국가, 문화 및 상황에서 예외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
- c.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d. 법 또는 법의 시행이 인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제행동규범 존중 원칙을 지켜야 한다.

5.3 유한화학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Recogni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in Yuhan Chemical Inc.)

5.3.1 유한화학은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유한화학과의 관계, 유한화학과의 이해관계자의 관계, 이해관계자 및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5.3.2 유한화학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이라는 핵심 주제에서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

6. 유한화학이 추구하는 핵심적 사회적책임 주제 및 세부 지침

6.1 일반사항 (General Requirements)

6.1.1 유한화학이 추구하는 사회적책임의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관련 이슈 사항을 식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유한화학은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안전 및 보건,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에 대한 핵심 이슈를 다룬다.

6.1.2 사회적책임은 동적이고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관심사의 진화를 반영하므로 향후 추가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 이슈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 장·단기 목표를 고려해야 하나, 유한화학이 핵심 주제 및 이슈를 다루는 데 사전에 결정된 순서는 없다. 순서는 유한화학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1.3 조직 거버넌스는 핵심 주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즉 조직은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핵심 주제 및 이슈 그리고 이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은 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노력이 다른 이슈와의 상충 조정을 포함해도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정 이슈를 대상으로 한 특정 개선이 다른 이슈에 해로운 영향을 주거나,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애주기(life cycle), 조직의 이해관계자 또는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가치사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2 조직 거버넌스 (Organization governance)

6.2.1 조직 거버넌스는 유한화학이 유한화학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 내 의사결정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핵심 기능이다.

6.2.2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이 자신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조직과 그 관계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6.2.3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사회적 책임 원칙을 의사결정 및 실행에 통합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6.2.4 **유한화학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는 다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를 개발**
- ② **경영진의 책무 및 설명 책임을 제시**
- ③ 사회적 책임 원칙이 실행되는 **환경 및 문화를 조성 및 육성**
- ④ 사회적 책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 조성**
- ⑤ **금융자원, 천연자원 및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 ⑥ **대표성이 낮은(under-represented) 그룹(여성, 인종 및 소수민족 그룹 포함)이 조직의 고위직을 차지할 공정한 기회 촉진**
- ⑦ **당면한 니즈 및 미래 세대의 니즈를 포함하여, 조직과 조직의 이해관계자 간의 니즈 균형잡기**
- ⑧ 의견 일치 및 불일치의 영역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는 **조직의 이해관계자와의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 수립**
- ⑨ 전 직급의 피고용인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격려
- ⑩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권한, 책임 및 역량 수준 균형잡기
- ⑪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정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실행을 기록**
- ⑫ **조직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해 의사소통**

6.2.5 유한화학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이러한 원칙의 기대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음의 경영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경영 시스템 요소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① **헌신과 책임**
유한화학은 적절한 자원을 배치하고, 고위 책임자를 규정함으로써 이 문서에 기술된 개념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야 한다.
- ② **법적 및 고객 요구사항**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유한화학은 해당 법률, 규정, 표준 및 관련 고객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③ 리스크 관리

유한화학은 이 원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위험성(risks)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절차(메커니즘)를 갖춰야 한다.

④ 문서화

유한화학은 이 원칙의 준수와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해야 한다.

⑤ 훈련 및 역량

유한화학은 경영진과 근로자가 이 원칙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지식, 기량 및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⑥ 지속적 개선

유한화학은 내/외부 평가, 감사 및 관리적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 사항에 대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실행하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⑦ 우려 사항에 대한 식별

모든 근로자는 협박, 괴롭힘 또는 실제적 보복의 위험이 없이 직장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우려, 불법 활동 또는 위반에 대해 신고하도록 권장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유한화학은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커뮤니케이션

유한화학은 근로자, 계약자 및 공급업체에게 이러한 원칙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6.3 인권, 노동(Human rights, Labour practices)

6.3.1 유한화학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6.3.2 유한화학은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 경영 이행을 이행한다.

- ①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②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③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한다.**
- ④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⑤ **아동노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비준(批准)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한다.

- 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⑦ 유한화학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⑧ 유한화학은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6.3.3 유한화학은 인권 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위 내용을 반영한 **인권 노동 원칙을 선언**해야 한다.

6.3.4 인권 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 및 국제노동기구(ILO),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6.3.5 인권 노동 원칙 적용 범위

- ① 유한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 노동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유한화학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 노동 원칙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③ 유한화학은 **인권 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해야 한다.
- ④ 본 인권 원칙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 원칙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6.3.6 유한화학 인권노동 기본 원칙

- ① 제 1 조 자유롭게 선택되는 고용
유한화학은 강제 노동, 담보 노동 또는 비자발적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빛을 탐감하기 위한 노동)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② 제 2 조. 차별금지 또는 무차별
유한화학은 차별이 없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임직원의 성별, 성적지향(동성애), 인종, 색깔, 민족, 국적, 종교, 정치적 소속, 노동조합원, 장애, 나이, 임신, 혼인 여부 등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③ 제 3 조. 임금,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준수
유한화학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시간, 의무적 복리후생을 포함한 관련 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유한화학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적시에 보상받는 기준체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과 근무가 요구되는지의 여부와 해당 초과 근무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소통하고 시간외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근무는 국가 및 국제 표준과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한화학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④ 제 4 조. 공정하고 인도적 대우

유한화학은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요 또는 노동자에 대한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괴롭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이 없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취급에 대한 위협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제 5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유한화학은 본 인권노동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작업 현장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인 소통과 노동자와의 직접적 계약(참여)이 장려된다. 유한화학은 지역 법률에 규정된 대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회합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으며, 대리인을 구하거나, 노동자 협의회에 가입할 권리를 존중한다. 근로자는 보복, 협박 또는 괴롭힘의 위협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제 6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유한화학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⑦ 제 7 조. 산업 안전 및 보건 보장

유한화학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보건 및 안전 조치는 계약자 및 수습업체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⑧ 제 8 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유한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⑨ 제 9 조. 고객 인권 보호

유한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3.7 인권 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유한화학은 최고 의사 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 6.3.8 유한화학은 인권노동 경영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인권노동 리스크 평가, 인권 침해 신고·접수를 받을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내부 교육 및 보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절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6.3.9 유한화학은 인권노동 기본 원칙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유한화학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조직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 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인권노동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홈페이지, 통합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인권노동백서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며,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 채널을 선택해야 한다.**
- 6.3.10 유한화학은 인권노동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노동 리스크에 대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해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6.3.11 유한화학은 인권노동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을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근로자 보호
유한화학은 근로자가 작업현장과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회사는 반드시 적절한 시설관리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해야 한다.
 - ② 공정 안전
유한화학은 화학 및 생물학적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위해성을 식별하고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물질들의 치명적인 유출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갖춰야 한다.
 - ③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유한화학은 사업장 및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 내 비상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이행하여 비상상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④ 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유한화학이 제조하는 의약품 화합물 및 의약품 중간체를 포함하여 유해물질과 관련된 안전정보가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그리고 유해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기타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세부 지침은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유한화학이 취득한 **ISO 45001 운영 체계에 따른다.**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6.4 환경 (The Environment)

6.4.1 유한화학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책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6.4.2 유한화학은 가능한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가능한 경우 유해물질의 사용을 피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환경 요소에 대하여 준수 및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① 환경 허가 및 보고

유한화학은 모든 해당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면허, 정보 등록 및 제한 사항을 획득해야 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과 배출물

유한화학은 폐기물, 대기배출가스 및 폐수 배출의 안전한 처리, 이동, 저장, 폐기, 재활용, 재사용 또는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람 또는 환경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폐기물, 폐수 또는 배출가스는 환경으로 배출하기 전에 적절하게 관리, 제어 및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료의약품과 같은 활성 의약품의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가 포함된다.

③ 유출 및 방출

유한화학은 환경으로의 우발적인 유출 및 방출,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④ 자원 사용

유한화학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지속 가능한 구매 활동(Sourcing) 및 추적 가능성

유한화학은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원재료(critical raw materials)의 공급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6.4.3 환경 요소를 준수 및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① 유한화학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한다.

② 유한화학은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운영해야 한다.

③ 유한화학은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기 위한 체계와 노력을 해야 한다.

④ 유한화학은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⑤ 유한화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 ⑥ 유한화학은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한화학은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유한화학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하고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⑧ 유한화학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위험을 예방, 최소화 및 완화하겠으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의 상태와 가치를 확인 및 평가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검토 하여야 한다.
- ⑨ 기타 환경에 관한 세부 지침은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유한화학이 취득한 ISO 14000 운영 체계에 따른다.

6.5 공정 운영 (Fair operating practices)

6.5.1 공정 운영에 있어서 윤리적 행동은 조직 간의 정당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유한화학은 윤리적 행동 기준의 준수, 촉진 및 장려는 물론 공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① 반부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화학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 a.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부패와 부당취득에 대처하는 정책 및 관행을 실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 b. 경영진이 반부패 보기를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행을 위한 의지표명, 장려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c. 피고용인과 대표자가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필요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 d. 부패 및 부패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유한화학의 피고용인, 대표자, 계약자 및 공급자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e. 유한화학의 피고용인과 대표자에 대한 보수가 적절하고, 정당한 서비스에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f. 부패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 g. 보복의 두려움 없이 보고와 후속 활동이 가능한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유한화학의 피고용인, 파트너, 대표자 및 공급자가 유한화학의 정책 위반 및 비윤리적이고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불공정한 대우를 보고하도록 장려한다.

- h. 형사법 위반을 해당 법 집행 당국에 알려야 한다.
- i. 유한화학이 운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조직들로 하여금 유사한 반부패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부패를 저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책임있는 정치적 참여

- a. 유한화학은 공적인 정치적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공공 정책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다.
- b. 유한화학은 부당한 영향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작, 협박 및 강압과 같은 공적인 정치적 프로세스를 훼손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 c. 유한화학은 책임있는 정치적 참여와 기부 및 이해상충 처리방법에 대해 유한화학의 피고용인과 대표자를 교육하고, 이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d. 로비, 정치적 기부 및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조직의 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 투명해야 한다.
- e. 조직을 대변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의 활동을 관리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f. 특정한 입장에 유리하도록 정치인이나 정책입안자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귀결되거나, 또는 이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치적 기부는 피해야 한다.
- g. 잘못된 정보, 허위표시, 위협이나 강요에 연관되는 활동을 금지한다.

③ 공정 경쟁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한화학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 a. 경쟁법과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조직 활동을 수행하며, 적절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 b.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여타의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c. 경쟁 법률 준수 및 공정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피고용인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d. 경쟁을 장려하는 공공 정책뿐만 아니라 반독점 및 반덤핑 관행을 지지해야 한다.
- e.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빈곤 같은 사회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조직은 조달 및 구매 결정을 통해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치사슬에 따른 리더십과 멘토링을 통해, 유한화학이 사회적책임의 원칙과 관행을 채택하고 지원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사슬에서의 모든 조직은 해당 법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각 조직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책임이 있다.

가치사슬에서 사회적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유한화학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 a. 사회적책임 목표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및 양성평등(gender equality) 기준을 **조직의 구매, 유통, 계약 정책과 관행에 통합시켜야 한다.**
- b. 다른 조직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반경쟁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 c. 사회적책임에 대한 유한화학의 의지표명이 절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에 대해 적절한 실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 d. 중소조직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에는 사회적책임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우수 실천사례(best practice)와 추가적인 지원(예를 들면, 기술 지원, 역량강화나 다른 자원 지원)이 포함된다.
- e. 유한화학이 사회적책임을 원칙과 이슈와 연관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들의 인식 제고를 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 f. 가능한 경우, 사회적책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치사슬 내 조직들의 역량 개선을 포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회적책임 관행을 이행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공정하고 실제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정 가격이 지불되도록 하고 적절한 배송시간과 안정적인 계약이 되도록 보장하는 등 적절한 구매 관행이 포함된다.

⑤ 재산권 존중

- a. 재산권과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정책과 관행을 이행해야 한다.
- b.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조직이 갖고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 c. 지배적 지위의 남용, 위조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재산권 위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d. 유한화학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 e. 유한화학의 지적 재산권과 물적 재산권을 행사하고 보호할 때, 사회의 기대, 인권 및 개인의 기본 니즈를 고려해야 한다.

6.6 소비자 이슈 (Consumer Issues)

6.6.1 유한화학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할 경우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 및 사생활 보안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6.6.2 유한화학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사용 및 폐기를 포함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중대한 기회를 가진다.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 6.6.3 사회적책임에 대한 소비자 이슈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마케팅 관행, 건강 및 안전 보호, 지속가능소비,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정보 및 사생활 보호, 필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취약하고 불리한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대처 및 교육과 관련이 있다. UN 소비자 보호 지침은 소비자 이슈 및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근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6.6.4 소비자 이슈와 관련하여 유한화학은 다음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① 중요 정보의 누락을 포함하여, 기만, 오도, 사기 또는 불공정,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계약 관행을 준수한다.
 - ② 소비자의 정보에 기반한 선택의 기반으로 쉽게 접근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③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건강과 안전 측면을 다루는 모든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 규정, 표준 및 규격(specifications)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 ④ 제품과 서비스의 긍정적인 환경적 측면, 에너지 효율성 및 사회적, 환경적으로 유익한 특성들을 소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에코 라벨링**이나 감사 활동과 같은 기타 검증체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추구해야 한다(동물의 신체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학대를 피하는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도 포함한다.).
 - ⑤ 제품을 반품하거나 또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서비스, 자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
 - ⑥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⑦ 개인 정보 수집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거나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얻은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
 - ⑧ 개인 정보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만 정보를 얻어야 하며, 정보 수집 이전이나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케팅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 이외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이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달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⑨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조직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그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데이터는 적절하게 삭제, 개정, 완료 또는 수정해야 한다.
 - ⑩ 보안장치를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⑪ 제품 관련 유해를 포함한 건강 및 안전 관련 표시와 정보와 필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6.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유한화학의 존재 가치가 지역사회와 별개의 것이 아닌 일부로 간주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및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유한화학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예를 들면, 문화, 종교, 전통 및 역사와 같은 지역의 특성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고려함은 물론 서로의 경험, 자원 및 노력의 교환을 지원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에 기여하여 한다.

유한화학은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한다.

6.7.1 지역사회 참여

- ① 유한화학의 사회 투자 및 지역사회 발전 활동이 취약집단, 차별받는 그룹, 주변으로 밀려난 그룹, 대표성이 없는 그룹, 대표성이 적은 그룹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선택이 확대되고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공익 및 지역사회 발전 목적에 기여하는 목표를 가진 지역 연합조직에 참여해야 한다.

6.7.2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 ① 유한화학의 투자 의사결정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는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
- ② 기술 선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고용기회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 ③ 임시 근로 방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고용 창출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 ④ 고용 및 역량 구축에 관해서는 취약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7.3 기술 개발 및 기술 접근성

- ① 유한화학은 지역사회의 사회 및 환경 이슈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②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해당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잠재력 있는 현지 지식 및 전통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지역사회의 파트너와 과학 및 기술 개발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 실험실 같은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런 일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7.4 부 및 소득 창출

- ① 유한화학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업가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②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금부과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 ③ 피고용인을 위한 퇴직연금 및 노령 연금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
- ④ 이외에도 유한화학은 보건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투자를 기획함에 있어 지역사회

유한화학 지속가능 경영 지침

발전 촉진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조달과 아웃소싱을 늘림으로써 지역에게 기회를 넓혀야 한다.

7. 보고서 발간(Report publication)

7.1 유한화학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성과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7.2 사회적책임 보고서

사회적책임 보고서의 발행은 유한화학의 사회적책임 활동의 가치있는 측면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한다. **전체 분야 또는 일부 분야에 대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서 작성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홈페이지 게시, 인쇄 자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단독 문서일 수도 있고, 연간 보고서의 일부일 수도 있다. 보고서의 형태는 통합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보고서로도 작성할 수 있다.